소관부서 : 체육진흥과

제정 2005 · 7 · 7 조례 제 574호 개정 2008· 1·10 조례 제 701호 개정 2008 · 7 · 25 조례 제 720호 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일부개정 2011 · 12 · 29 조례 제 916호 일부개정 2013 · 10 · 1 조례 제1001호 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일부개정 2015 · 9 · 25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17·12·28 조례 제1368호 일부개정 2018 · 3 · 28 조례 제1378호 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일부개정 2019 • 12 • 13 조례 제1555호 일부개정 2021 · 9 · 28 조례 제1751호 일부개정 2023 · 3 · 6 조례 제1900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3 · 3 · 14 조례 제1907호 일부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02호 일부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17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5 • 11 • 7 조례 제2300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 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1·12 ·29〉
- 제2조(설치종목 등)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설치하는 세부종목(전국체전 정식종목 에 한정한다) 및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1·9·28]

- 제3조(구성) ① 선수단은 단장, 부단장, 부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선수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부장은 체육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 〈개정 2008·1·10, 2008·7·25, 2013·10·1, 2018·3·28, 2023·3·14, 2025·11·7〉
  - ③ 단원은 감독·코치(이하 "지도자"라 한다) 및 선수로 구분한다.

- 제4조(임용) ① 단원은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용한다.
  - ② 단원 중 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, 지도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
  - ③ 단원 중 선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입된 우수선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25 ·11·7〉
  - ④ 단원의 임용기간은 제5조에 따른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연 도의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.
  - ⑥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3·3·14]

- 제5조(인사위원회)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24 · 7 · 1〉
 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,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체육 관련 전문위원 3명을 위촉직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08·1·10, 2008·7·25, 2013·10·1, 2018·3·28, 2019·12·13, 2023·3·6, 2024·7·1〉
  - ④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08·1·10, 2011·12·29, 2025·11·7〉
  - 1. 단원의 임용 및 연봉 사전 심의
  - 2.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
  - 3.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
  - 4. 삭제〈2025·11·7〉
  - 5.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
  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개정 2024·7·1〉

(추 6)

- 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된다. 〈개정 2021·9·28〉
-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1·12·29〉
- 1. 개최일시
- 2. 출석위원의 서명
- 3. 심의안건과 내용
- 4. 의사
- 5. 그 밖에 중요한 사항
-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이천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 〈신설 2024·7·1〉
- 제5조의2(위원회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 위원 본인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·7·1]

- 제6조(임무)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.
  -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. 〈개정 2015·9·25〉
  - ③ 부장은 선수단을 지도 · 감독한다.
  - ④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·육성한다. 〈개정 2011·12·29〉
- 제7조(단원의 자격)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.

- ② 선수는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 〈개정 2011·12·29〉
- **제8조(해임)**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1·12·29〉
  - 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
  - 2.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
  - 3.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
  - 4.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
  - 5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
  - 6. 자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사람
- 제9조(겸직 금지)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이천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요청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1·9·28]

- 제10조(복무 및 훈련)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「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한다.
  -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,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**제11조(보수 등의 지급)**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1·12·29, 2019·12·13〉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〈2008·1·10 조례 제70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·7·25 조례 제720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- ⑤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"시민생활지원국장"을 "자치행정국장"으로 한다.
- 16 부터 17 까지 생략

부칙 〈2011 · 12 · 29 조례 제91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3·10·1 조례 제1001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- ①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본문 중 "자치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국장"으로 한다.
- ⑧ 부터 16 까지 생략

부칙〈2015・9・25 조례 제115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7·12·28 조례 제1368호〉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·3·28 조례 제13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- ①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"안 전행정국장"을 "자치행정국장"으로 한다.
-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〈2019·12·13 조례 제1555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최초임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남은 단원의 봉급은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조례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.

부칙 〈2021 · 9 · 28 조례 제175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3 · 3 · 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- ⑨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제3항 중 "자치행정국장"을 "행정자치국장"으로 하고, "자치행정과장, 체육지원센터소장"을 "행정지원과장, 체육진흥과장"으로 한다.
-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23・3・14 조례 제190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 • 7 • 1 조례 제210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·7·1 조례 제2117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- ⑨ 「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"행정자치국장" 을 "자치행정국장"으로 하고, "행정지원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한다.
-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〈2025·11·7 조례 제230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